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711
------	------

2014. 2. 26.
재정경제위원회

I .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4년 2월 7일, 이경애의원

나. 회부일자 : 2014년 2월 11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51회 임시회】

-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2014. 2.26)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 의결(원안가결)

II . 제안설명의 요지(이경애 의원)

가. 제안이유

- 국내외 경제사정의 악화와 고용없는 성장, 실업률 증가, 비정규직 양산 등의 영향으로 사회적·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목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사회적기업에 대한 성장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사회적기업은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자생력 확보와 생태계 형성이 여전히 미흡한 상황에 있어, 이들 기업이 생산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의무화하는 등 사회적기업의 성장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사,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계약 시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계획을 구분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남중)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사회적 가치 실현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적기업의 안정적 성장과 이를 통한 사회 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해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나.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구매 촉진(안 제9조)

-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등”)은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창출과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설립·지정된 기업임.
- 서울시내에는 2013년 12월 현재 198개 인증사회적기업을 포함해 모두 425개 사회적기업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음.

〈표 1〉 서울지역 사회적기업 현황

계	사회적기업		
	서울형	지역형	인 증
425	121	106	198

- 하지만, 상당수 사회적기업 등이 제품 판매와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는 등 자생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이하 “시”)가 서울형 사회적기업의 생존율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년차에 96%이던 생존율이 3년차에는 69% 이하로 떨어지는 등 정부의 지원 종료시 생존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아울러, 대다수 사회적기업 등이 활성화를 위한 가장 시급한 문제로 운영자금 부족과 함께 마케팅 및 판로문제를 들고 있는 등 이들 기

업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 판로 확보 문제가 기업의 생존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¹⁾).

- 이에 따라 안 제9조에서는 서울특별시 또는 산하기관의 장은 각종 공사, 물품의 제조나 구매, 용역계약 등에 있어서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특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에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구매계획을 포함하도록 하였음.
- 2010년 이후 시와 자치구, 산하기관은 매년 사회적기업을 비롯한 각종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 결과 매년 구매실적이 급증하고 있고, 2013년에는 622억원의 관련 제품 구매 실적을 기록하고 있음.

〈표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실적

(단위 : 억원)

실적 현황	계	본청,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13년 실적	622	115	403	104
‘12년 실적	440	89	276	75
‘11년 실적	116	6	69	41
‘10년 실적	44	2	42	-

1) 서울연구원(2010),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지원방안」

-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제품의 우선구매에 대한 별다른 구속력이 없는 상황에서 개정안은 사회적기업의 물품과 서비스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동기를 활성화하고 공공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판로개척과 자생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9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우선구매 촉진) ① 시장 또는 서울특별시 산하기관의 장은 공사,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계약 시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서울특별시 산하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